

의안번호	2205215
의 퇴 인	강득구 의원
회 답 일	2024. 12. 6.
추 계 번호	24B483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4조의3 (도시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의 작성·활용) 신설	도지사는 관할 시 또는 군에 소재한 도시지역의 생태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 또는 군수(「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또는 군의 장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협의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음. 이 경우 도지사는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경우 시장은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것으로 봄(제2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제4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4조의3(도시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주체에 도지사 포함(안 제34조의3 신설)

- 현행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함)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¹⁾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함
-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주체에 도지사를 추가하고,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경우 시장이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1개 특별자치시, 1개 특별자치도, 75개 시 등 8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상태이고, 특별시, 광역시 등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소요 비용은 서울특별시 1억 4,700만원, 부산광역시 1억 8,100만원, 대구광역시 9억 7,500만원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

1)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표 1] 최근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비용 집행 사례

구분	비용
특별시	- 서울특별시 : 147백만원
광역시	- 부산광역시 : 181백만원 - 대구광역시 : 975백만원 - 인천광역시 : 897백만원 - 광주광역시 : 447백만원 - 대전광역시 : 241백만원
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 79백만원
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570백만원

자료: 환경부

- 현행법²⁾에 따라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지사가 관할 시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한 사례는 2023년 충청남도 1억 2,000만원, 2022년 충청남도 6,000만원 등임

[표 2]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비용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9년	1,894	1,494	-	200	100	-	-	100	-
'20년	2,271	1,671	-	400	200	-	-	-	-
'21년	0	-	-	-	-	-	-	-	-
'22년	60	-	-	-	60	-	-	-	-
'23년	120	-	-	-	120	-	-	-	-

자료: 환경부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⑤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직접 작성하고, 이를 관할 시장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으로 간주할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내용, 범위 등에 따라 기존에 도지사 관할 구역 내의 시장이 작성하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비용의 합계보다 도지사가 작성하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비용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이를 예측하기 어려워 개정안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의 발생 여부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음
 - 환경부에 따르면, 도에서 일괄 작성 시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어 작성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도에서 재량적으로 조사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에 작성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관할 지역 내 군(郡)지역까지 포함하여 지도를 작성할 경우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음
 - 참고로,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관할 지자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일괄 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군(郡) 지역 3개를 포함하여 총 31개 대상, 재량적 사항인 '탄소흡수 지도'까지 추가로 작성 중), 150억원의 예산이 집행 중에 있음. 기존 경기도 내 28개 시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소요 비용의 합계는 107억원이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